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11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① 제안 사유

○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정원 승인

- 정원 승인 : 3명 (기계 8급 1, 기능전기 8급 1, 기능사역 9급 1)

- 승인 일자 : 2004. 10. 26

○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정원 승인

- 정원 승인 : 1명 (수의 8급)

- 승인 일자 : 2004. 11. 01

○ 「백두대간 보호업무」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

- 정원 승인 : 1명 (임업 8급)

- 승인 일자 : 2004. 11. 16

② 주요 내용

○ 정원의 총수 : 530명 ⇒ 535명 (5명 증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19명 ⇒ 524명 (5명 증)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530명"을 "535명"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"519명"을 "524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<u>530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19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1명	제2조(정원의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<u>535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24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1명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. 11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① 제안 사유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·공포 (2004. 3.11)
 - 강원도 총무과-9413(2004. 9. 3)호로 「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」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

② 주요 골자

- 정원 승인 : 2004. 9. 3
- 설치 부서 : 자치행정과
- 인 력 : 1 명 (지방행정서기)
- ※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위기·갈등상황에 대한 대처, 지역안정기능 등 임을 감안할 때 "지방부서"에서 사무를 수행
- ▶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(정의)
 - 다.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- 담당 업무
 - 기반체계보호 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
 -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
 -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·집행
 - 기반체계보호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(예, 경보 발령)
 - 기반체계보호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
 - 인력·장비·물자 등의 동원명령
 -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
 - 위험지구 설정
 - 대피명령·강제 대피조치·통행제한·응원·응급부담 등

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지방공무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529명"을 "530명"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"518명"을 "519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2조(정원의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<u>529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18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1명	제2조(정원의총수)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<u>530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19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1명	